

1. 개정이유

보건복지부에 지역사회 통합 돌봄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4급 또는 5급 1명), 불법개설 의료기관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발달장애인 지원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정부혁신·조직관리 업무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장애인 인권 보호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전면 재구축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2023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0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9명, 6급 6명, 7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에 미세위해물질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연구관 1명, 연구사 2명), 결핵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7급 1명, 연구사 2명),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청사 보안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7급 1명, 전문경력관 나군 1명), 건강보험분쟁조정 행정심판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및 질병관리본부의 하부조직으로 두고 있던 장기이식관리센터를 질병관리본부장 소속 하에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으로 개편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3급 또는 4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감염병의 전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4명(6급 1명, 7급 3명, 8급 11명, 9급 19명)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8급 4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20. 2. .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소속 책임운영기관 중 입원적합성심사 조사를 위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에 7명(8급 7명), 국립나주병원에 4명(8급 4명), 국립부곡병원에 7명(8급 7명), 국립춘천병원에 1명(8급 1명) 및 국립공주병원에 3명(8급 3명)을, 국립공주병원 전산관리를 위한 인력 1명(9급 1명)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국립마산병원에 4명(7급 3명, 8급 1명), 국립목포병원에 3명(7급 3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20. 2. .,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구체적인 직급 등 세부 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하고,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을 진단하기 위한 한시정원 중 9명(4급 9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20. 2. . ~ 2.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 제29조 및 제30조를 각각 제7장제3절 제30조, 제28조 및 제29조로 한다.

제30조(중전의 제25조의2)의 제목 “(장기이식관리센터)”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1항) 중 “장기이식관리센터”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으로 한다.

① 원장은 부이사관·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제30조 앞에 “제3절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을 삽입한다.

제31조 앞에 “제3절 국립검역소”를 삭제하고 “제4절 국립검역소”를 삽입한다.

제36조제1항 후단 중 “67명”을 “76명”으로 하고, 같은 조 9항 중 “국립소록도병원의 진료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2명), 조제·투약업무를 담당하는 2명(6급 1명, 7급 1명) 및 질병관리본부의 예방접종·희귀질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연구관 2명)”을 “국립소록도병원의 진료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2명), 조제·투약업무를 담당하는 2명(6급 1명, 7급 1

명), 질병관리본부의 예방접종·희귀질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연구관 2명) 및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의 비공무원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1명(7급 1명)”으로 한다.

제3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장애인 인권 보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2년 2월 28일까지 별표 11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두며, 별표 11의 정원 중 1명(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전산사무관·약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명)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 ①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2와 같으며, 별표 12의 정원 중 2명(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 또는 약무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전산사무관·약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명)은 행정안전부, 1명(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전산사무관·약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명)은 고용노동부, 1명(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전산사무관·약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명)은 국토교통부,

1명(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전산사무관·약무사무관
·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명)은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별표 2 중 총계 “802”를 “806”으로 하고, 일반직 계 “794”를 “798”로 하
며,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 또
는 약무사무관 “52”를 “53”으로 하고,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
건사무관·전산사무관·약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255”
를 “258”로 한다.

별표 2의2 중 총계 “804”를 “808”로 하고, 일반직 계 “796”을 “800”으로
하며,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
또는 약무사무관 “52”를 “53”으로 하고,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
보건사무관·전산사무관·약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25
5”를 “258”로 한다.

별표 3 중 1. 국립정신건강센터 총계 “315”를 “331”로 하고, 일반직 계 “3
15”를 “33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302”를 “318”로 하고, 2. 국립나주
병원 총계 “179”를 “183”으로 하고, 일반직 계 “179”를 “18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73”을 “177”으로 하고, 3. 국립부곡병원 총계 “176”을
“183”으로 하고, 일반직 계 “176”을 “18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73”을 “180”으로 하고, 4. 국립춘천병원 총계 “116”을 “117”로 하고,
일반직 계 “116”을 “117”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14”를 “115”로 하고,
5. 국립공주병원 총계 “126”을 “130”으로 하며, 일반직 계 “126”을 “130”

으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124”를 “128”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217”을 각각 “221”로 하고, 간호서기 “26”을 “30”으로 한다.

별표 5 중 1. 국립마산병원 총계 “115”를 “119”로 하고, 일반직 계 “115”를 “119”로 하며, 4급 이하 “114”를 “118”로 하며, 2. 국립목포병원 총계 “95”를 “98”로 하고, 일반직 계 “95”를 “98”로 하며, 4급 이하 “94”를 “97”로 한다.

별표 5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29”를 각각 “32”로 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2 다음에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전산사무관·약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를 신설하며, 행정주사보·보건주사보·시설주사보·공업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9”를 “10”으로 하고, 열관리운영서기보 1 다음에 “전문경력관 나군(청사보안담당) 1”를 신설한다.

별표 7 중 총계 “864”를 “907”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857”을 “900”으로 하며, 일반직 계 “856”을 “899”로 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보건연구관 1 다음에 “부이사관·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 1”를 신설하며, 행정주사 또는 보건주사 “19”를 “20”으로 하고, 행정주사보 또는 보건주사보 “55”를 “59”로 하며, 간호주사보 “6”을 “7”로 하고, 행정서기 또는 보건서기 “79”를 “90”으로 하며, 보건서기 또는 간호서기 25 다음에 “간호서기 1”를 신설하고, 행정서기보 또는 보건서기보 “13”을 “32”로 하며, 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 “92”를 “93”으로

하고, 보건연구사 또는 공업연구사 “133”을 “137”로 한다.

별표 7의2 중 총계 “866”을 “909”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859”를 “902”로 하며, 일반직 계 “858”을 “901”로 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보건연구관 1 다음에 “부이사관·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 1”를 신설하며, 행정주사 또는 보건주사 “19”를 “20”으로 하고, 행정주사보 또는 보건주사보 “55”를 “59”로 하며, 간호주사보 “6”을 “7”로 하고, 행정서기 또는 보건서기 “79”를 “90”으로 하며, 보건서기 또는 간호서기 25 다음에 “간호서기 1”를 신설하고, 행정서기보 또는 보건서기보 “15”를 “34”로 하며, 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 “92”를 “93”으로 하고, 보건연구사 또는 공업연구사 “133”을 “137”로 한다.

별표 8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6”을 각각 “17”로 하고, 보건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 “6”을 “7”로 한다.

별표 10, 별표 11 및 별표 1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0]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38조제1항 관련)

1. 보건복지부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보건산업정책국 해외의료사업지원관	1명 (고위공무원단)	2020년 7월 31일까지
2) 건강정책국 자살예방정책과	6명 (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	2022년 1월 31일까지
3) 보건산업정책국 해외의료사업과	7명 (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1명)	2020년 7월 31일까지
4) 보건산업정책국 의료정보정책과	4명 (4급 1명, 5급 1명, 6급 2명)	2021년 5월 31일까지
5) 인구정책실 아동학대대응과	5명 (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경위 1명)	2021년 3월 31일까지
6) 기획조정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6명 (4급 1명, 5급 2명, 7급 2명, 전문경력 관 나급 1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2. 보건복지부 소속기관

가.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질병관리본부 기획조정부	1명 (고위공무원단)	2020년 5월 31일까지
2) 질병관리본부 위기소통담당관	1명 (4급 1명)	2020년 12월 31일까지

3) 질병관리본부 위기분석국제협력과	1명 (4급 1명)	2020년 12월 31일까지
---------------------	---------------	-----------------

나.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원	평가기간
1) 의료서비스 지원 업무(국립소록도 병원)	6명 (8급 6명)	2020년 12월 31일까지
2) 의료서비스 지원 업무(국립소록도 병원)	6명 (8급 6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3) 의료서비스 지원 업무(국립소록도 병원)	4명 (8급 4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4) 검역 업무(질병관리본부 국립검역소)	19명 (5급 1명, 6급 4명, 7급 5명, 8급 7명, 9급 2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5) 검역 업무(질병관리본부 국립검역소)	34명 (6급 1명, 7급 3명, 8급 11명, 9급 19명)	2022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1]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39조 관련)

1. 제39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0년 5월 31일)

총계	5
일반직 계	5
4급 이하	5

2. 제39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1년 2월 28일)

총계	1
일반직 계	1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보건사무관 · 전산사무관 · 약무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

3. 제39조제3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2년 2월 28일)

총계	1
일반직 계	1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보건사무관 · 전산사무관 · 약무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

[별표 12]

보건복지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40조 및 제41조 관련)

1. 의료보장심의관(존속기한: 2021년 1월 31일)

총계	1
일반직 계	1
고위공무원단	1

2. 예비급여과(존속기한: 2021년 1월 31일)

총계	7
일반직 계	7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보건사무관 · 전산사무관 · 약무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3
행정주사보 · 사회복지주사보 또는 보건주사보	3

3. 의료보장관리과(존속기한: 2021년 1월 31일)

총계	7
일반직 계	7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보 건사무관 또는 약무사무관	1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보건사무관 · 전산사무관 · 약무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3
행정주사보 · 사회복지주사보 또는 보건주사보	2

4. 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준속기한: 2023년 2월 28일)

총계	20
일반직 계	20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 또는 약무사무관	3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전산사무관·약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9
행정주사·사회복지주사·보건주사·전산주사·약무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 또는 간호주사	6
행정주사보·사회복지주사보·보건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약무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25조의2(장기이식관리센터)</u> <u><신설></u> ① <u>장기이식관리센터</u>에 장기기증지원과, 장기이식관리과 및 혈액안전감시과를 두되, 장기기증지원과장 및 장기이식관리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혈액안전감시과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 ④ (생략)	<u>제30조(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u> ① 원장은 부이사관·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u>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u>---- ----- ----- ----- ----- ----- ----- --.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u>제28조 삭제</u> <u>제29조 · 제30조</u> (생략)	<u><삭제></u> <u>제28조 · 제29조</u> (현행 제29조 및 제30조와 같음)
<u><신설></u> <u>제3절 국립검역소</u> <u><신설></u>	<u>제3절</u> <u>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u> <u><삭제></u> <u>제4절 국립검역소</u>
제3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국립정신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	제3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6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② ~ ⑧ (생략)

⑨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국립소록도병원의 진료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2명), 조제·투약업무를 담당하는 2명(6급 1명, 7급 1명) 및 질병관리본부의 예방접종·희귀질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연구관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39조(한시정원) ①·② (생략)

-----.

----- 76명-----

-----.

② ~ ⑧ (현행과 같음)

⑨ -----
-----국립소록도병원의 진료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2명), 조제·투약업무를 담당하는 2명(6급 1명, 7급 1명), 질병관리본부의 예방접종·희귀질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연구관 2명) 및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의 비공무원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1명(7급 1명)-----
-----.

제39조(한시정원) ①·② (현행과

<신 설>

<신 설>

같음)

③ 장애인 인권 보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2년 2월 28일까지 별표 11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두며, 별표 11의 정원 중 1명(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전산사무관·약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명)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제41조(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 ①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2와 같으며, 별표 12의 정원 중 2명(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 또는 약무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

· 전산사무관 · 약무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명)
 은 행정안전부, 1명(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보건사무관
 · 전산사무관 · 약무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명)
 은 고용노동부, 1명(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보건사무관
 · 전산사무관 · 약무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명)
 은 국토교통부, 1명(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보건사무관
 · 전산사무관 · 약무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명)
 은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2]

보건복지부 공무원정원표(제35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802</u>	<u>806</u>	+4
·	·	·	
·	·	·	
일반직 계	<u>794</u>	<u>798</u>	+4
·	·	·	
·	·	·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보건사무관 또는 약무사무관	<u>52</u>	<u>53</u>	+1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보건사무관 · 전산사무관 · 약무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u>255</u>	<u>258</u>	+3
·	·	·	
·	·	·	

[별표 2의2]

보건복지부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804</u>	<u>808</u>	+4
•	•	•	
•	•	•	
일반직 계	<u>796</u>	<u>800</u>	+4
•	•	•	
•	•	•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보건사무관 또는 약무사무관	<u>52</u>	<u>53</u>	+1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보건사무관 · 전산사무관 · 약무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u>255</u>	<u>258</u>	+3
•	•	•	
•	•	•	

[별표 3]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국립정신병원 공무원 정원표(제36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1. 국립정신건강센터			
총계	<u>315</u>	<u>331</u>	+16
일반직 계	<u>315</u>	<u>331</u>	+16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302</u>	<u>318</u>	+16
·	·	·	
2. 국립나주병원	·	·	
총계	<u>179</u>	<u>183</u>	+4
일반직 계	<u>179</u>	<u>183</u>	+4
·	·	·	
3급 또는 4급 이하	<u>173</u>	<u>177</u>	+4
·	·	·	
3. 국립부곡병원	·	·	
총계	<u>176</u>	<u>183</u>	+7
일반직 계	<u>176</u>	<u>183</u>	+7
·	·	·	
3급 또는 4급 이하	<u>173</u>	<u>180</u>	+7
·	·	·	

4. 국립춘천병원	.	.	
총계	<u>116</u>	<u>117</u>	+1
일반직 계	<u>116</u>	<u>117</u>	+1
.	.	.	
3급 또는 4급 이하	<u>114</u>	<u>115</u>	+1
.	.	.	
5. 국립공주병원	.	.	
총계	<u>126</u>	<u>130</u>	+4
일반직 계	<u>126</u>	<u>130</u>	+4
.	.	.	
3급 또는 4급 이하	<u>124</u>	<u>128</u>	+4
.	.	.	

[별표 4]

국립소록도병원 공무원정원표(제36조제2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217</u>	<u>221</u>	+4
일반직 계	<u>217</u>	<u>221</u>	+4
·	·	·	
·	·	·	
간호서기	<u>26</u>	<u>30</u>	+4
·	·	·	
·	·	·	

[별표 5]

국립결핵병원 공무원정원표(제36조제3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1. 국립마산병원			
·	·	·	
총계	<u>115</u>	<u>119</u>	+4
일반직 계	<u>115</u>	<u>119</u>	+4
·	·	·	
4급 이하	<u>114</u>	<u>118</u>	+4
·	·	·	
2. 국립목포병원			
총계	<u>95</u>	<u>98</u>	+3
일반직 계	<u>95</u>	<u>98</u>	+3
·	·	·	
4급 이하	<u>94</u>	<u>97</u>	+3

[별표 5의2]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원 정원표(제36조제4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29</u>	<u>32</u>	+3
일반직 계	<u>29</u>	<u>32</u>	+3
·	·	·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보건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2		
<u>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보건사무관 · 전산사무관 · 약무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u>	<u><신 설></u>	<u>1</u>	+1
·	·	·	
행정주사보 · 보건주사보 · 시설주사보 · 공업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u>9</u>	<u>10</u>	+1
·	·	·	
·	·	·	
열관리운영서기보	1		

전 문 경 력 관 나군(청사보안담당)	<신 설>	<u>1</u>	+1
-------------------------	-------	----------	----

[별표 7]

질병관리본부 공무원 정원표(제36조제6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864</u>	<u>907</u>	+43
1 .			
공무원(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u>857</u>	<u>900</u>	+43
·	·	·	
·	·	·	
일반직 계	<u>856</u>	<u>899</u>	+43
·	·	·	
·	·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보건연구원	1		
<u>부이사관·기술서기관</u> <u>또는 보건연구원</u>	<u><신 설></u>	<u>1</u>	+1
·	·	·	
·	·	·	
행정주사 또는 보건주사	<u>19</u>	<u>20</u>	+1
·	·	·	
·	·	·	
행정주사보 또는 보건주사보	<u>55</u>	<u>59</u>	+4

•	•	•	
•	•	•	
간호주사보	<u>6</u>	<u>7</u>	+1
•	•	•	
•	•	•	
행정서기 또는 보건서기	<u>79</u>	<u>90</u>	+11
•	•	•	
•	•	•	
보건서기 또는 간호서기	25		
<u>간호서기</u>	<u><신 설></u>	<u>1</u>	+1
•	•	•	
•	•	•	
행정서기보 또는	<u>13</u>	<u>32</u>	+19
보건서기보			
•	•	•	
•	•	•	
보건연구관 또는	<u>92</u>	<u>93</u>	+1
공업연구관			
보건연구사 또는	<u>133</u>	<u>137</u>	+4
공업연구사			
•	•	•	
•	•	•	

[별표 7의2]

질병관리본부 공무원 정원표(제36조제6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866</u>	<u>909</u>	+43
1 .			
공무원(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u>859</u>	<u>902</u>	+43
·	·	·	
·	·	·	
일반직 계	<u>858</u>	<u>901</u>	+43
·	·	·	
·	·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보건연구원	1		
<u>부이사관·기술서기관</u> <u>또는 보건연구원</u>	<u><신 설></u>	<u>1</u>	+1
·	·	·	
·	·	·	
행정주사 또는 보건주사	<u>19</u>	<u>20</u>	+1
·	·	·	
·	·	·	
행정주사보 또는 보건주사보	<u>55</u>	<u>59</u>	+4

•	•	•	
•	•	•	
간호주사보	<u>6</u>	<u>7</u>	+1
•	•	•	
•	•	•	
행정서기 또는 보건서기	<u>79</u>	<u>90</u>	+11
•	•	•	
•	•	•	
보건서기 또는 간호서기	25		
<u>간호서기</u>	<u><신 설></u>	<u>1</u>	+1
•	•	•	
•	•	•	
행정서기보 또는	<u>15</u>	<u>34</u>	+19
보건서기보			
•	•	•	
•	•	•	
보건연구관 또는	<u>92</u>	<u>93</u>	+1
공업연구관			
보건연구사 또는	<u>133</u>	<u>137</u>	+4
공업연구사			
•	•	•	
•	•	•	

[별표 8]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공무원 정원표(제36조제7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6</u>	<u>17</u>	+1
일반직 계	<u>16</u>	<u>17</u>	+1
·	·	·	
·	·	·	
보건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	<u>6</u>	<u>7</u>	+1
·	·	·	
·	·	·	